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9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규정 신설

개정안은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퇴직 후 10년 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3조의2(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 10년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시기·기간·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등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¹⁾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활동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현직 소방공무원과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수건강검진의 종류로는 ①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②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 ③ 위험 노출 혹은 작업 관련 증상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건강진단이 있음.

2023년도에는 총 64,289명의 소방공무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았고 1인당 평균 검진비용은 357,900원이며 총 비용은 약 244억원으로 나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타났음.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개요>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특성에 따른 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 방안 마련
- ※ '04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작(「산업안전보건법」 근거) → '12년 「소방공무원 복지법」 마련
- (법적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

☐ 주요내용(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5장)

- (실시대상) 전국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적용) 및 소방관
서에서 소방활동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대원(헬기 조종사, 정비사), 인명구조원 훈련사, 상황실 관
제요원 등 현장출동 및 교대근무 수행
- (건강진단 구분)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구분		진단시기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정기건강진단	연 1회
	수시건강진단	위험 노출 혹은 작업 관련 증상 발생 시
정밀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정기, 수시) 후 직업성 관 련 증상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건강진단 항목) 소방공무원 多빈도 질환(심뇌혈관, 근골격계, 교대
근무&암발생 등) 및 감염성 질환 포함²⁾
- (1인당 지원 예산) 20만원~58만원
(소방청 및 각 시·도소방본부 별 상이³⁾)

(자료: 소방청)

2)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은 [참고 1] 참조

3) 2023년도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정기건강진단) 비용은 [참고 2] 참조

<2023년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현황4)>

정기검진 인원	총 검진비용	비고 (1인당 평균 검진비용)
64,289명	24,425,475,600원	357,900원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하였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등5) 유사한 위험 직군의 경우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만 퇴직공무원에게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직군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퇴직소방공무원의 누적 인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각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검진비용 등 보다 상세한 현황은 [참고 2] 참조

5) 교정직 및 출입국직 공무원 : 별도 건강검진 지원 규정이 없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0억 2,600만원(연평균 12억 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함.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 제13조의2 신설)	-	534	1,133	1,805	2,554	6,026	1,205

주: 1.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안 제13조의2)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대상자인 퇴직소방공무원은 추계기간 동안 매년 7.9% 증가하고 추계기간 동안 누적적으로 발생하며 1인당 특수건강진단비용은 2023년 기준 299,900원(소방청 자료)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소방공무원 보건의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은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유해인자의 특성에 따라 질환 발병의 시기가 매우 다양⁶⁾하고 소방공무원은 타 직종에 비해 평균 사망연령(2023년도 소방공무원 평균 사망연령: 74세)이 현저하게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6)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은 중피종, 폐암, 방광암, 비호지킨림프종 등 다양하며 질환의 발병 시기는 개인별로 상이하다고 설명함.

※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참고)

- 중피종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
- 방광암, 폐암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
-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 등에 따른 직업성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23년 공무원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단위 : 세)

한국인	소방	경찰	정무직	일반직	공안직	교육직	법관· 검사	별정직	기능직
83.5	74	79	85	79	77	82	81	85	80

※ 평균사망연령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이 종결된 자의 사망한 시점 기준 평균연령임(공무원연금공단 자료)

※ 한국인(83.5세) : 기대수명으로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자료: 소방청)

기획재정부는 업무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특수건강진단을 ‘퇴직 후 10년’까지 받아야 하는 의학적인 당위성이 부족하고 경찰공무원 등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의안전관리 규정」 [별표2]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1. 특수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의 일반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같음하되, 다음 표의 검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구 분	검 사 항 목
내분비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유해물질	납(혈중 납), 카드뮴(혈중 카드뮴), 광물성분진/석면(흉부방사선검사), 벤젠(전혈구 검사)
감염성 질환	HBs Ag, HBs Ab, anti-HAV IgG, 수두, 홍역, 잠복결핵

* 감염성질환 예방접종의 방법과 횟수

1) 항원·항체가 음성일 시 예방접종 실시

-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 모두 음성인 경우 0, 1, 6개월에 B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 A형 간염 IgG 항체가 음성인 경우 0, 6개월에 A형 간염예방접종 실시

2) 신규 입사 전 접종 권장사항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성인이후 접종 경력이 없는 경우 1회 접종
- MMR(홍역-볼거리-풍진) : 1967년 이후 출생자 한하여 2회 접종

3) 감염성 질환관련 검사항목에서 특이사항 발견 시 소방관서 보건담당

자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사후관리

- 4) 별첨 알레르기(아낙필락시스) 반응검사는 관련 업무 배치 전 소방관서장이 필요 시 실시

나) 정기건강진단

-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유해인자		검사항목	비고
기본검진		일반건강진단 항목(소변검사 10종 포함), 문진표(계통별), 상담 및 진찰	
분진		흉부방사선검사	
소음		순음청력검사(0.5-8 kHz)	
심혈관 질환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측정값)		
	당화혈색소 및 심전도* 24시간심전도, 운동부하검사,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MDCT) 또는 심장초음파**		* 만 40세부터 매년 **만 50세 1회, 택1
뇌혈관질환		경동맥 초음파	만 50세, 만 55세, 만 60세 각 1회
유기화합물	벤젠	전혈구검사	
중금속	납	혈중 납	
	카드뮴	혈중 카드뮴	
근골격계		경추 MRI, 요추 MRI, 어깨 MRI, 무릎 MRI	만 40세, 만 50세, 만 60세 각 1회, 1부위 선택
교대근무 & 암발생 위험		수면장애 : 문진 및 상담	
		위암 : 위내시경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암(여성) :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암 : 간초음파, 알파태아단백(AFP) 유방암(여성)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혈액암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 만 40세 이상, 매년 (단, 대장내시경은 5년 주기)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2년 주기

유해인자	검사항목	비고
	폐암 : 저선량 폐CT 전립선암(남성) : 전립선특이항원(PSA)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매년 (B·C형 간염, 간경변) 유방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혈액암 : 전연령, 매년 폐암 : 만 50세 이상, 2년 주기 전립선암 : 만 50세 이상, 매년 (국가암검진과 연계 가능)
감염성 질환	C형간염(anti-HCV) 매독(VDRL 또는 RPR)	
정신건강	정신건강 및 직무 스트레스 체크리스트	정신건강 설문조사로 같음(단, 필요시 진행)

다) 수시건강진단

-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작업성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실시 시기	검사항목	비고
대형화재 발생 후 또는 유독물질 발생 현장 노출 후 ※ 반복·지속적인 실화재훈련을 포함	호흡기에 대한 문진과 진찰 단순흉부방사선촬영 벤젠 : 전혈구 검사 중금속 : 혈중 납, 혈중 카드뮴 메트헤모글로빈(MetHb) 기타 필요한 검사*(소변 중 뮌콘산, 소변 중 페놀, 혈중 벤젠 등)	노출 후 가급적 빠른 시 간 안에 검진 받을 수 있 도록 함 * 필요시 추가 검사 가능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시	의사 상담 및 진찰 필요시 신체부위별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MRI	업무 관련 근골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 발생 위험 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도와 상담 필요 시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2인 이상의 사망 사고, 어린이 사망 사고, 소방 대원(동료)의 사망 사고, 기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질환 발생이 우려되 는 사고를 경험한 경우
감염성 질환에 노출 시	각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에 준한 검사	감염원별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검진 실시

실시 시기	검사항목	비고
벌집제거 활동 등에 따른 벌독 알레르기 위험 시	벌독 알레르기 검사	소방관서장이 필요 시 주기적으로 실시
헬기탑승자 검진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준용	
특수활동 종사자	자각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면담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참고하여 추가검사 가능	잠수업무 종사자, 화학적 인자 노출 종사자, 상황, 전산, 통신 등의 종사자, 방사선 또는 방사능 취급자

*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도 자각증상이 있을 시, 의사와 면담 후 필요검사 실시 가능

** 유해인자(감염인자 포함) 노출이 의심되는 대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다른 대원에게 유사한 증상 및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집단질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의사와 면담 후 필요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음

2. 정밀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후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검진여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표적질환	검 사 항 목	비고
소음	고막운동성검사	
벤젠	말초혈액도말검사, 소변 중 뮤콘산, 혈중 벤젠, 소변 중 페놀	
고혈압	혈압, 24시간 혈압 검사	
당뇨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관상동맥질환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부정맥	24시간 심전도	
뇌혈관질환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Brain MRA)	
호흡기계질환	흉부방사선촬영, 폐기능검사, 폐 전산화단층촬영	
수면장애	수면각성활동량 검사(sleep actigraph), 수면다원검사	
근골격계질환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검사	

표적질환	검 사 항 목	비고
대장암	복부 CT	
유방암	조직검사	
혈액암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기타 암	전립선초음파, 신장초음파, 방광초음파	

* 소방공무원 다빈도 표적질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 참고표(검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거되지 않은 검사도 실시 가능)

참고 2**2023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정기) 비용 현황**

※ 자료: 소방청

(단위 : 원, 명)

지역	검진비용(a×b)	1인당 검진비용(a)	검진대상(b)	비고
서울	3,397,050,000	450,000	7,549	
부산	1,142,040,000	310,000	3,684	
대구	859,648,000	292,000	2,944	
인천	1,114,180,000	340,000	3,277	
광주	926,121,600	583,200	1,588	
대전	575,400,000	350,000	1,644	
울산	490,000,000	350,000	1,400	
세종	161,000,000	280,000	575	
경기	5,621,500,000	500,000	11,243	
강원	858,200,000	200,000	4,291	
충북	862,992,000	312,000	2,766	
충남	1,392,300,000	350,000	3,978	
전북	944,440,000	280,000	3,373	
전남	1,272,900,000	300,000	4,243	
경북	1,898,750,000	350,000	5,425	
경남	2,155,510,000	530,000	4,067	
제주	459,600,000	383,000	1,200	
창원	293,844,000	282,000	1,042	
계	24,425,475,600		64,289	
1인당 평균 검진비용		357,900		